



영국의 임원 연봉 결정에 있어 주주와 직원의 참여 방안 논의

김성욱 (영국 UCL 박사과정(보건경제학))

■ 머리말

미국과 영국의 CEO들의 천문학적인 보수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인 맥케슨의 CEO인 존 해머그린은 2010년에 무려 1억 4,500만 달러(약 1,600억원)를 급여로 받았다.¹⁾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였던 주식 값이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CEO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이 70% 증대하였다.²⁾ 한편 레킷 벤키서의 CEO인 영국의 바트 베티는 3,600만 파운드(한화 약 648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³⁾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대기업에서도 임원들의 임금을 10%씩 인상하였다.

영국에서 소위 블루 칩이라고 하는, 성장 가능성이 비교적 큰 회사의 CEO는 1년에 평균 79만 1,000 파운드(한화 약 14억 원)를 받는다.⁴⁾ 여기에 보너스와 차량, 그에 딸린 유지비, 자녀의 교육비 등의 부가 수입을 고려하면 그 액수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FTSE 주가지수에 등재된 회사 CEO의 25%가 500만 파운드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는 등⁵⁾ 최근 세계 경제위기와 맞물려 CEO의 높은 보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영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주와 직원들이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1) The Guardian, Wednesday 14 December 2011.

2) Ibid

3) The Guardian, Monday 14 September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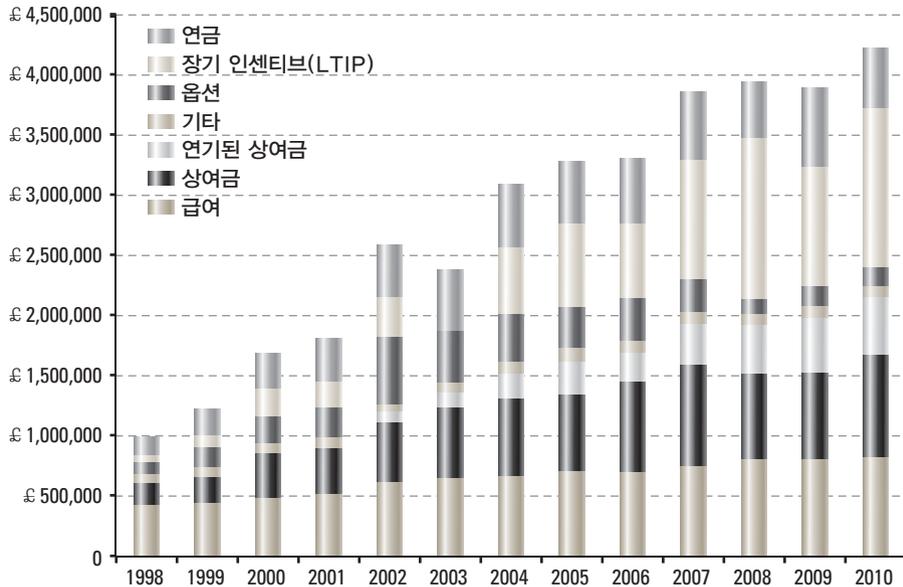
4) Ibid

5) Ibid

■ 연봉과 실적의 관계

임원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맥나이트(1996)의 연구에 의하면 임원의 높은 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적이라고 한다.⁶⁾

1998~2010년까지 FTSE 지수에 편입된 회사의 CEO 총 보수 내역



자료: BIS PAPER(2011).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임원들의 보수체계에서 본봉보다도 연급, 보너스 그리고 장기 인센티브(Long Term Incentive Plan: LTIP)의 비중이 훨씬 크다. 그렇다면 임원들이 인센티브와 보너스를 받을 만큼 실적을 내었는지가 의문일 것이다.

2011년 manifest and MM&K의 조사에 따르면 FTSE 100의 지수가 2009~2010년까지 9%가 인상되는 동안 주식 가격은 변동이 없었으나, 이 회사들의 임원 연봉은 32%가 상승했음을 밝혀냈다.⁷⁾ 다시 말해서 회사의 실적 향상과 관계없이 연봉만 상승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

6) Mcknight, P.(1996), "An Explanation of Top Executive Pay : a UK study,"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4(4).

7) Eironline, <http://www.eurofound.europa.eu/eiro/2011/10/articles/uk1110029i.htm>

안 일반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거의 없었다. 영국 국립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 5~7월까지 물가상승률은 4.4%인 반면에 일반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2.8%에 그쳤다.⁸⁾

임원들의 높은 급여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이미 2006년 영국 회사법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항이 삽입되었다.⁹⁾ 이 조항은 회사를 떠나는 임원의 보상은 주주들의 투표에 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공시 기간의 포함, 그리고 임원의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포함하고 있다.¹⁰⁾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CEO를 고용할 때에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적이 나빠도 과도한 급여를 수령하는 CEO들은 여전히 존재한다.¹¹⁾

■ 주주의 보수결정위원회 참여

2011년 10월 영국 산업경제부는 새로운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PAPER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임원의 보수가 적절한지, 임원의 보수가 회사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는지, 혹은 직원의 월급이 인상됨에 따라 증가하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사항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주주들에게 임원의 보수 결정권을 주는 방안과 직원이 보수결정위원회에 투입되어 임원의 연봉을 정하는 방안이다. 즉 주주와 근로자 대표를 보수결정위원회에 포함시킴으로써 임원들의 과도한 급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의해서 선출이 되는데 주로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또한 이 페이퍼는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 보장과 그들의 선출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02년 이래로 영국에서 주주는 임원의 보수에 자문 투표(advisory vote)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주주들은 더욱 큰 힘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금융위기 이후에 보수에 대한 반대표가 금융위기 당시의 3% 수준에서 더욱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¹²⁾ 이와

8)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hare Ownership – Share Register Survey Report, 2008.

9) BIS discussion paper 2011

10) 2008년에 이 조항은 수정되었다.

11) BIS discussion paper, *op.cit.*

12) BIS discussion paper, *op.cit.*

같은 선례에서 보건대, 주주에게 보수결정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는¹³⁾ 스웨덴의 선례를 통해 보수결정위원회가 어떻게 조직되면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주주와 그들의 대표가 어떻게 회원으로서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 모델이 이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주주 대표에게 보수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운영 상황이나 임원의 보수 현황에 대해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 회사 임원진이 주주의 장기적 이득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사진으로 선출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진이 됨에 따라서 그들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몇몇 주주들은 내부자(insider)가 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한다.¹⁴⁾

또한 국립통계청은 영국 내 기업 지분의 40%는 해외에 있다고 추정하였다.¹⁵⁾ 외국인 투자자나 단기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임원 보수 결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그들에게는 관심을 쏟아야 할 다른 수많은 투자 회사들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이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주들의 투표권이 법적인 구속 효과(binding effect)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주주들의 주장은 단지 제안하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다.

BIS PAPER에서는 주주가 보수결정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 · 네덜란드 ·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지만¹⁶⁾ 영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의 보수결정위원회 편입 방안에 대해 현재 영국에서는 산업경제부 주관하에 자본시장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의 보수결정위원회 참여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13) Tomorrow's Company, Tomorrow's Corporate Governance: Bridging the UK engagement gap through Swedish-style nomination committees, 2009.

14) BIS discussion paper, *op.cit.*

1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p.cit.*

16) BIS discussion paper, *op.cit.*

■ 직원 대표의 보수결정위원회 참여

BIS PAPER에서 주장하는 직원 대표의 보수결정위원회 참여 방안은 캐드버리 리포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캐드버리 리포트는 영국의 아드리안 캐드버리 경이 1991년에 조직한 회의에서 발간된 것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회계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 이 리포트(1992)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 보수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최초로 밝혔다. 또한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다수의 영국 회사들이 보다 투명한 과정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캐드버리 리포트가 발표될 당시 영국 내 대기업들의 3분의 1 정도가 회사 내에 보수결정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발표하였다.¹⁸⁾ 주로 보수결정위원회는 이사진에서 선출되고 최소 3인의 독립된 비상임 이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으로 인해 너무 작은 인력 풀에서 뽑히기 때문에 현 이슈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다 다변화된 보수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따라서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다른 방안은 보다 독립적인 구성원을 참가시켜서 비상임 이사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직 임원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새로운 실적 목표를 제시하거나, 임원의 보수를 실적과 연관지을 때, 이것의 실현 가능성 등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을 지지하는 관계자들은 전직 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더욱 다변화되고 신선한 시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상임 이사가 여러 개의 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이익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바로 이 이익 간의 갈등이다.

BIS PAPER는 이 이익 갈등을 막기 위해서 직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 대표의 임원 보수 결정 관여가 서로 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직원 대표의 법적 지위도 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선출 방식과 그들의 책임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없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다. 이를 위해 BIS PAPER는 직원에게 승인 투표(endorsement vote)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7) BIS discussion paper, *op.cit.*

18) BIS discussion paper, *op.cit.*

이 획기적인 제안에 대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찬성론자인 무역노조의회(TUC)는 1990년대 이래로 이 제안을 재청하고 지지해 왔다.¹⁹⁾ 이들은 직원을 보수결정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대중의 확신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자 협회(Institute of director)도 역시 법적 구속력과 함께 직원 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인사개발공인연구소(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²⁰⁾의 찰스 코튼에 의하면 직원 대표를 뽑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²¹⁾ 대표로 선출된 직원들이 또다시 새로이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그 직원들이 자신들의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몸을 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찬반 양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 방안은 여하튼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 맺음말

여론에 관계없이 이 방안은 머지않아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월 8일,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주주들에게 현재의 자문 투표권보다 강한 법적 구속력 있는 투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²²⁾ 그는 임원들이 성공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저조한 실적과 실패에 대해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CEO가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야당 내각의 산업경제부 장관인 추카 우무나는 단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투명성과 기업성과의 책임 증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경제부 장관인 빈스 케이블은 BIS PAPER에서 다루어진 쟁점들인 투명성 제고와 직원

19) Eironline, *op.cit.*

20) 영국 최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공인기관.

21) Eironline, *op.cit.*

22) BBC online, <http://www.bbc.co.uk/news/uk-16458570>

의 보수결정위원회 참여, 그리고 상위 10위권에 드는 CEO들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적어도 올 초에는 입법화하겠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²³⁾ 과연 야당 내각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개선된 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LI**

23) The Guardian, Tuesday 22 November 2011.